KOSHA GUIDE

C - 4 - 2012

이싱 설치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천공 즉시 엄지말뚝을 근입하여야 하며 천공구멍은 덮개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(3) 엄지말뚝은 흙막이 배면부 지반 높이 보다 약 0.2m 높게 시공하고 동 위치에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흙막이 상단부의 지표수 유입방지, 낙석, 낙하 발생방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흙막이 가시설과 시공되는 구조물 사이에는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5) 엄지말뚝을 이음 할 경우에는 응력이 최소가 되는 곳으로써 지중에서 동일 높이를 피하여야 한다.
- (6) 엄지말뚝의 이음은 흙,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접이음 부는 모재의 응력 부담능력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엄지말뚝을 설치 후 천공 구멍은 양질의 토사, 모래, 소일 시멘트(soil cement) 등으로 완전히 충진시킨 후에 후속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(8) 엄지말뚝의 선단은 설계도서에 의거 충분한 근입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9) 기타 엄지말뚝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은 KOSHA GUIDE C-39-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및 KOSHA GUIDE C-63-2012 흙막이공사(C.I.P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.

5.3 토류판 설치

- (1) 토류판 부재는 최종 굴착깊이에서의 최대측압강도로 계산된 판의 두께 이상의 것으로 전 흙막이벽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토류판은 굴착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굴착높이가 0.5m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 대한 신속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